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
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윤 석 열 

2022년 6월 22일

국 무 총 리 한 덕 수

국 무 위 원
기 획 재 정 부
장 관 추 경 호

●대통령령 제32716호

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

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본칙 중 “별표”를 “별표 1 및 별표 2”로 한다.

별표를 별표 1로 하고, 같은 표(중전의 별표) 중 2710란, 2710.1란, 2710.12란 및 2710.20란을 각각 삭제한
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)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
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.

제3조(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
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에 따른다.

[별표 2]

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

관세율표 번 호		품명	규격 등	세율
호	소호			
2710		석유와 역청유(瀝靑油)(원유는 제외한다),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[석유나 역청유(瀝靑油)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(瀝靑油)인 것으로 한정한다], 웨이스트 오일(waste oil)		
2710	1	석유와 역청유(瀝靑油)(원유는 제외한다),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[석유나 역청유(瀝靑油)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(瀝靑油)인 것으로 한정하며,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(waste oil)은 제외한다]		
2710	12	경질유(輕質油)와 조제품		
		4. 나프타		0.5%
		5. 엔·지·엘(NGL)		0.5%

2710	20	석유와 역청유(瀝靑油)(원유는 제외한다),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[석유나 역청유(瀝靑油)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(瀝靑油)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][웨이스트 오일(waste oil)은 제외한다] 1. 경질유(輕質油)와 조제품 라. 나프타 마. 엔·지·엘(NGL)		
				0.5%
				0.5%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관세법」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인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하여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, 최근 원유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상 0.5퍼센트의 조정관세를 적용받는 나프타 등에 대하여 2022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